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19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최혁진·전진숙·김문수  
윤준병·정춘생·정혜경  
윤종오·조계원·김용민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47조 및 제52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탄소예산의 설정)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 이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 허용 총량(이하 “탄소예산”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연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30년: 40퍼센트
2. 2035년: 65퍼센트
3. 2040년: 80퍼센트
4. 2045년: 90퍼센트
10. 잔여 탄소예산 현황

제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을 “잔여 탄소예산 현황,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을 “재교육, 재취업, 전직(轉職)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협동조합 활성화)”를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②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 재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⑥ · ⑦ (생략)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생략)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잔여 탄소예산 현황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잔여 탄소예산 현황,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재교육, 재취업, 전직(轉職)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창업-----  
-----  
-----.

제52조(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 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하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  
-----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

<p><u>&lt;신 설&gt;</u></p> <p>② (생 략)</p>	<p><u>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u></p> <p>② <u>정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당 지역의 기후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 및 지역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	--